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16
----------	-----

2016. 12. 1.(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발의일자: 2016년 11월 22일

다. 회부일자: 2016년 11월 23일

라. 상정일자: 2016년 12월 1일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옥진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16.9.13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및 위원의 위촉 기준을 개정(안 2조2항)
-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 및 개정(안 4조1항)
- 위원의 해촉 규정을 개정(안 11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안 12조)
- 위촉위원 연임 제한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 직제명 변경에 따라 ‘경리담당사무관’ 을 ‘계약담당사무관’ 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용어 정리.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적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호선 방법과 위원의 위촉 기준을 개정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및 개정하였으며,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였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경리관으로 하고”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로 한다”를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제2조제2항제2호 중 “자로서 관련분야”를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제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기관 및”을 “국가기관과”로,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로, “있는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경리담당사무관”을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없는”을 “없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관련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내에 한하여”를 “이내에서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 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안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 ②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u>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경리관으로 하고</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로 한다.</u></p> <p>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u>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u></p> <p>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u>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u></p> <p>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u>추천하는 자</u></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 ----- <u>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u></p> <p>② ----- <u>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u>----- ----- ----- <u>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u></p> <p>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u>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u></p> <p>2. ----- <u>사람으로서 관련 분야</u>----- -----<u>사람</u></p> <p>3.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u></p>

현행	개정안
<p>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p>	<p>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p>
<p>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p>	<p><삭 제></p>
<p>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p>	<p>6. 국가기관과 -----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 풍부한 사람</p>
<p><신 설></p>	<p>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재무과장으로 한다.</p>
<p>③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p>④ ----- ----- 계약담당사무관-----.</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 사무 ----- ----- 없을 ----- -----.</p>
<p>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p>	<p>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p>

현행	개정안
<p><u>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u></p>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u>각호</u>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다만, <u>제4호</u>부터 제7호까지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u></p> <p>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u>사항</u></p>	<p><u>있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4조(기능) ① ----- ----- ----- ----- <u>각호</u> ----- ----- - <u>제5호</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관련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u>이의제기한 사항</u></p> <p>5. <u>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6.·7.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6.·7. (현행과 같음)</p> <p>② ----- ----- <u>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u>----- -----.</p>
<p>제6조(소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u>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u>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 <u>5인 이상</u>으로 구성한다.</p> <p>④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p>제6조(소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해당 분야</u>----- ----- -- <u>5명</u>-----.</p> <p>④ <u>제1항에 따른</u> ----- ----- ----- -----.</p>
<p>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u>때에는</u>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p>	<p>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u>따라</u> ----- - <u>경우에는</u> ----- ----- -----</p>

현행	개정안
<p>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당해</u>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u>한하여</u>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p>	<p>----- <u>해당</u> ----- -----<u>이내에서만</u>----- -----</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 <u>따른</u> ----- -----.</p>
<p>제10조(심의결과 반영) 교육감은 제8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u>때에는</u>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0조(심의결과 반영) ----- ----- <u>따라</u> ----- ----- <u>경우에는</u> ----- ----- -----.</p>
<p>제11조(위원의 해촉) <u>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 2. <u>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u> 	<p>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u>교육감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현행	개정안
<p><u>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u></p> <p><u>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u></p> <p><u><신설></u></p>	<p><u>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4. 제12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p> <p><u>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p> <p><u>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u></p> <p><u>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u></p> <p><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u></p> <p><u>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u></p> <p><u>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u></p>

현행	개정안
	<p><u>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u></p> <p>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안건</u></p> <p>5. <u>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u></p> <p>② <u>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u></p> <p>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